

##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(상담) 및 조치내역

### □ 상담내용 및 조치내역

연번	상담내용	조치내역
1	· 우리 기관·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?	▶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한 국가·지자체, 공직유관단체, 공공기관, 각급 학교, 언론사 소속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으로, 진흥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.
2	· 직원·상사·거래처 경조사비, 화환, 부의금 한도는?	▶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비는 5만원 한도, 화환·조화는 10만원 한도에서 허용되며, 경조사비(5만원) + 화환(10만원)을 동시에 전달할 경우 합산 10만원 이하이고, 경조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하면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되, 각 항목의 한도(경조사비 5만원, 선물 5만원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	· 친한 친구, 친척, 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규제되는지?	▶ 상대방이 공직자등이 아니고,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순수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금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,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자가 수수하는 경우에는 한도·예외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.
4	· 심사위원, 자문위원, 강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·숙박비, 연수비 허용범위는?	▶ 통상 실비 범위의 교통·숙박비, 합리적인 연수비 등은 직무상 필요에 따른 비용보전으로 보아 허용되지만, 과도한 편익 제공은 금품수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준액·내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.
5	· 근무시간 내에 외부강의가 가능한가요?	▶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「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」 제6조에 따라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한다고 고시되어 있으니,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

□ 신고내역 : 해당사항 없음